



수 신 시·도건축사회 회장

(경유)

제 목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, 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」 관련 의견조회

1.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건축사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19390), 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」(김종양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19497) 관련입니다.
3. 상기 법률안이 불임과 같이 제·개정되어 발의된 바, 이에 귀 회의 의견을 조회하오니, 검토의견을 2026.7.16.(목)까지 회신(kira-law@naver.com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

가.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·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인 경우,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규정 완화(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)

□ 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」 주요내용

가. 공동수급체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업체의 참여(제16조제1항)

-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, 해당 공사 현장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

나. 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에 대한 특례(제28조제1항 및 제2항)

- 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,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제한을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
- 공사감리자가 해당 공사의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 공정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, 해당 공정에 대해 건축법, 주택법,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

다. 인정받은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의 특례(제31조제1항)

-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서 제출 시 설계도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

붙임 : 1)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 1부

2) 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」 1부

3) 검토의견 작성 양식 2부. 끝.

대한건축사협회



담당자 **이혜진** 팀장 **성다경** 국장 **박재범** 사무부처장 **강주석** 사무처장 **고한상** 상근부회장 **안충환** 회장 **김재록**

협조자 (공람)

시행 법제 230 - 1228 (2026. 7. 2.) 접수

우 0664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

전화번호 02-3415-6840 / 팩스번호 02-3415-6868 /

/ <http://www.kira.or.kr>

kira@kira.or.kr

문서24 “대한건축사협회” / 비공개